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0. 2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5. 10. 14.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5.10.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민간 키즈카페 2시간 기준 1.8천원 이상)을 경감하고,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용 시설로,
-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3조(아동 전용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 추진 필요성

- 계절·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필요
-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경제성 증대
- 전문성과 아동 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 하여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성 제고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돌봄 및 놀이 복합시설로의 운영 및 관리
- 조직·인사관리·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면적

시설명	소재지	면적(㎡)	개관 예정일
염리동2호점	송문6길 22, 신촌교회 (염리동)	200.85	2026. 4.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민간위탁기간: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위탁(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

▶ 소요예산(연간)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시비	구비	비고
총계	211,901	135,697	76,204	
인건비 (3인기준)	153,001	112,897	40,104	시비: 2명까지 100%, 초과 인원 30% 구비: 1명 초과 인원의 70% *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운영비	57,000	22,800	34,200	시비40%, 구비60%
복지포인트	1,900	0	1,900	구비100%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안)

- 2025. 10.: 공간 무상사용 협약 체결(신촌교회)
- 2025. 11.~2026. 3.: 리모델링 및 놀이기구 설치
- 2025. 12.: 현장 컨설팅 및 위험가치평가 실시
- 2026. 1.: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4.: 준공 및 개소식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3조(아동 전용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실내 놀이터는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청결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 인력 및 내용

□ 운영인력

- 운영인력: 3명(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1명)
 - 인력 배치기준: 100㎡당 1명
 - 필수요원: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 운영내용

- 이용대상: 영유아(3세~6세)
- 이용정원: 16명/ 놀이공간(전체면적의 80%) 기준 10㎡당 1명
- 이용인원: 22명/ 놀이공간(전체면적의 80%) 기준 7㎡당 1명
- 이용요금: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 이용방법: 우리동네 키움포털 예약
- 운영일 및 이용시간: 월~토, 09:00~18:00

(평일) 3회차 운영 / 사전입장 허용

시간	09:00~09:20	09:20~11:40		11:40~12:00	12:00~13:00	13:00~15:20		15:20~15:40	15:40~18:00	
		사전 20분	09:40~11:40			사전 20분	13:20~15:20		사전 20분	16:00~18:00
내용	운영 준비/소독, 청소	예약확인 및 결제, 입장	1회차	소독, 청소	점심	예약확인 및 결제, 입장	2회차	소독, 청소	예약확인 및 결제, 입장	3회차

(토요일) 4회차 운영/ 회차별 10분 단축 운영, 환기 시간 확보

시간	09:00~09:10	09:10~11:00	11:00~11:10	11:10~13:00	13:00~14:00	14:00~14:10	14:10~16:00	16:00~16:10	16:10~18:00
내용	운영 준비/소독, 청소	1회차	소독, 청소	2회차	점심	소독, 청소	3회차	소독, 청소	4회차

3. 프로그램 운영계획

특 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놀이기구 포함)	지원공간	활동놀이	오감놀이	상상창의놀이
	- 안내데스크 - 물품보관함 - 화장실 - 테라스 등	- 플레이짐 - 지형놀이 - 슬라이드 - 지형놀이	- 블록놀이(레고놀이) - 편백놀이 - 핀스크린 - 인터랙티브 볼풀장	- 낚시놀이 - 역할놀이 - 판타레이
	 	 	 	 
	○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가용 자원 활용: 미술, 원예놀이, 쿠키클래스, 부모참여프로그램 ○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 - 동행일자리, 노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일자리 연계사업 활용			

4.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조성현황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조성 현황>

순번	구분	구분	조성(운영)기간	사업유형	면적(㎡)	비고
1	운영중	상암점	23.8.31.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600	
2	조성중	염리동 쌍룡산근린공원점	23.2.~25.12.	쌍룡산근린공원 건축(신축)	249.91	공원녹지과
3	조성중	서강동1호점	24.11.~25.11.	서강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	426.82 (420.9)	
4	조성중	서교동1호점	25.2.~25.11.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407.1	무상임차 (최소 10년)
5	조성중	서교동2호점	24.1.~26.4.	SH공사 노후매입 주택 활용 생활SOC 조성사업	274.82	무상임차 (최소 10년)
6	조성중	서강동2호점	24.1.~27.10.	구립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 대체신축	450	
7	조성중	도화동점	25.10.~26.4.	도화장난감대여점 리모델링	258	
8	조성중	염리동 신촌교회	25.10.~26.4.	신촌교회 리모델링	200.85	무상임차 (최소 10년)

서울시 직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현황

1	조성중 (서울시)	노고산점	24.11.~26.4.	신촌지역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43	서울시 직영
2	주말형 (서울시)	난지한강공원	9월~11월 운영		150㎡ 이상	서울시 직영



5. 2025년 운영실적

363회차 운영, 이용인원: 17,090명 이용 (하루평균 63명, 회차당 평균 47명)

※ 2024년 이용료 수입: 25,347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